

#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8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2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개 정 이 유

행정쇄신 과제로 선정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음

## 2. 주 요 골 자

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, 통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동의 동장 추천만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.

## 3. 기 대 효 과

저소득주민이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, 통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시간절약과 주민 편의 도모

## 4. 주요사업계획

- '93 사업계획 : 35가구 163,000천원
- '93 5월까지 실적 : 14가구 62,000천원
- ※ '93 예산 조치
  - '93 당초예산 : 융자금-31가구 145,000천원 예비비 2,000천원
  - '93 1회추경 요구 : 융자금-35가구 163,000천원 예비비 2,297천원

### 5. 기타 참고사항

- 용자대상 :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- 용자금액 : 가구당 500만원 이내
- 대출이자 : 연리 5% (연체이자 15%)
- 상환조건 :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
- 자금용도
  - 행사,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
  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
 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
  - 직계비속에 대한 중·고등학교의 학자금
  -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